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7. 11. 10.
시민보사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7년 10월 22일 구청장
- 나. 회부일자 : 1997년 10월 23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1997년 11월 3일 제52회(임시회)제1차 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제안설명자 :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 가. 제안이유
 - 유료예방접종 항목중 인플루엔자 항목이 추가신설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함.
-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 제2조 제2항 제4호별표중 보건소 유료접종란에 디프테리아 금액란의 가 - 다항과 같이 하고 인플루엔자를 신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6
----------	-----

제출년월일 : 1997년 10월 22일
제 출 자 : 영 등 포 구 청 장

1. 개정사유

유료예방접종 항목중 인플루엔자 항목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 제2조 제2항 제4호 별표중 보건소 유료접종란에 디프테리아 금액란의 가 - 다항과 같이 하고 인플루엔자를 신설

3. 관계법규

- 전염병예방법 제12조
- 지역보건법 제14조 제2항
-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 제2조 제2항 (별표4)

4. 참고사항

- 합의사항 : 없음
- 예산조치 : 해당없음

5. 조례안 : 별첨

첨 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수수료액중 4.유료접종란중 동란 금액의 가목중 “보건소장”을 “보건소”로 하고 “사. 디프테리아”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아. 인플루엔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디프테리아	0.5ml(도스)	금액은 위의 가-다항과 동일함
	아. 인플루엔자	0.5ml	금액은 위의 가-다항과 동일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조표

현행					개정(안)					
별 표(수수료액표)					별 표(수수료액표)					
구분	종목	단위	금액	비고	구분	종목	단위	금액	비고	
4.유료 접종	가 - 바 (생략)	가.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구입 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이하의 금액은 1원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4.유료 접종	가 - 바 (현행과 같음)	가.보건소의 ----- ----- ----- ----- ----- ----- ----- ----- ----- -----		
		나 - 다(생략)		나-다 (현행과 같음)						
	사.디프 테리아	0.5ml (도스)	500원				사.디프 테리아	0.5ml (도스)	금액은 위의 가-다항과 동일함	
(신 설)					아.인플 루엔자	0.5ml	금액은 위의 가-다항과 동일함			
1. 3. 5. 6 (생략)					1. 3. 5. 6 (현행과 같음)					

수 수 료 액
=====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1. 건강진단 수첩 및 진단서, 재증명	가. 근로자 건강진단서	1통	500원	· 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 건강진단수첩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 는 '사'항에 '카' 항을 더한 수수 료액으로 한다.
	나.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통	500원	
	다. 일반진단서	1통	500원	
	라. 특별진단서	1통	2000원	
	마. 사체검안서	1통	5000원	
	바. 성별 및 연령감정서	1통	2000원	
	사.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 수첩 또는 진단서	1통	위생분야종사자들의 건강진단규칙 제10 조에서 규정한 수수 료액	
	아. 사망진단서	1통	500원	
	자.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1통	500원	
	차. 결핵진단서	1통	300원	
	카. 기타 사실 공부에 의해 발급 하는 증명서	1통	300원	
	타. 기타발급증명서 추가 발급	1통	300원	
	파. 1통초과 발급	1통	100원	
	하. x선 필름 사본발급	1매	3000원	
		(14×14인치)		
2.	<삭제 '94. 12. 30>			
3. 항결핵보 급제	○ 초치료처방			
	에탐부톨+아이나+피라지나미드+ 리팜피신 6	1인1개월분	2,000원	
	에스엠+아이나+리팜피신+피라지 나미드 6	1인1개월분		
	에탐부톨+아이나+리팜피신 9	1인1개월분		
	에스엠+아이나+리팜피신 9	1인1개월분		
	에탐부톨+아이나+리팜피신 6	1인1개월분		
	에스엠+아이나+리팜피신 6	1인1개월분		
	○ 재치료처방			
	피라지나미드+피스+에스엠	1인1개월분	2,000원	
	에탐부톨+피라지나미드+리팜피신	1인1개월분		
	에탐부톨+피라지나미드+키나마이 신	1인1개월분		
	피라지나미드+리팜피신+키나마이 신	1인1개월분		
	에탐부톨+리팜피신+키나마이신	1인1개월분		
	에탐부톨+피라지나미드	1인1개월분		
에탐부톨+리팜피신	1인1개월분			
리팜피신+피라지나미드+에탐부톨	1인1개월분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4. 유료접종	가. 일본뇌염	1ml	<p>가. 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p> <p>나. 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병·의원의 접종 수수료는 약품공급 가격과 의료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가 기준중 생물학적 제제 주사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일본 뇌염접종은 피하근육주사를 적용한다. 단, 10자리 이하 금액의 산정은 “가”항 단서의 규정에 준한다.</p> <p>다. 전향에 의한 지정 병·의원의 유료접종 약품공급 가격은 구입 가격으로 하며 1회용 주사기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단, 매회 공급총액의 10자리 이하 금액의 산정은 “가”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다.</p>	
	나. 홍역, 볼거리, 풍진	혼합백신 1회분		
	다. 간염	1ml		
	라. 장티푸스	1인분		
	마. 유행성출혈열	0.5ml		
	바. 램토스피라증	1ml		
	사. 디프테리아	0.5ml(도스)		
5. 검사	가. 간염검사	1회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 진단 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	
	나. 수질검사	1회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에 준한다.	인허가용이 아닌 것에 한한다.
6. 구강보건 과 진료비	가. 치면열구전색진료비	1회	보건소 치과 1회 방문당 수가 총 진료비 전액	비보험급여대상 진료이지만 보건소를 통한 예방진료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고시 의료보험요양 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거 산정